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꼭! 챙겨야 할 사항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신고서 제출서류 목록

분류	종류	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43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43호의2
	안분명세서	별지 44호의6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별지 43호의3
	가산세액 계산서	별지 43호의4
첨부서류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별지 43호의5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 해당 법인만	별지 43호의9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식

$$\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 \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div 2$$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법인세를 공제받았다라도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불가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가능(0.9%, 1.2%)

12월말
결산법인의
'18년 귀속 법인소득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 과세대상 법인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1%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	200만원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4,200만원
3천억원 초과	2.5%	9억 4,200만원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흐름도

과세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동일 표준세율(1%~2.5%) 지방세법 제103의 20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 등 양도소득 : 1%(미등기4%) 지방세법 제103의 31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0.9%(20억 초과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
산출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 지방세법 제103의 31
세액공제 + 감면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규정 없음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
추가납부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의 10% (이자상당가산액, 업무무관자산 비용 및 지급이자, 이월과세 등 추가납부)
총부담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시부과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 해운기업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은 제외(2018.1.1. 이후 성립분)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년 이전 귀속분에 대한 경정·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되는 세액 (당초세액의 100분 10에 미달되는 경우)
차감 납부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정신고와 납부 지방세법 제103의 23 수정신고 지방세법 제103의 24

신고·납부기한

구분	신고·납부기한
내국법인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내 지방세법 제103의 23
연결법인	연결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이내 지방세법 제103의 37
수정신고, 세무서 결정·경정	법인세 수정신고(세무서 결정·경정 포함)와 동시 지방세법 제103의 24

특별징수로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안분계산은이렇게!!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기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

사례 총부담세액 10,000원, 특별징수세액 4,000원, 본점 A시(70%), 지점 B시(30%), 특별징수지 C시

구분	사업장		특별징수지 C
	A(70%)	B(30%)	
총 부담세액	10,000원		징수세액
안분세액	7,000원	3,000원	4,000원
기납부세액	4,000원		
총액 안분	2,800원	1,200원	
차감납부할세액	4,200원	1,800원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총부담세액에 상당하는 기납부세액은 안분, 초과한 금액은 본점 가산

사례 총부담세액 10,000원, 특별징수세액 31,000원, 본점 A시(70%), 지점 B시(30%), 특별징수지 C시

구분	사업장		특별징수지 C
	A(70%)	B(30%)	
총 부담세액	10,000원		징수세액
안분세액	7,000원	3,000원	31,000원
기납부세액	31,000원		
안분대상액	10,000원 (총부담세액)		
안분	7,000원	3,000원	
본점가산 (=환급)	21,000원 (31,000원 - 10,000원)		
소 계	28,000원	3,000원	
차감납부할세액	-21,000	0	